

#### 주요 내용 :

### 01. 법인소득세

- 회사 정책에 따른 고정 출장 수당
- 장기계약에 대한 현금지원
- 판매 및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종속생산시설이 법인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소득

### 02. 부가가치세

- 판매 및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종속생산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
- 본사와 같은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신고

### 03. 외국인계약자세

- 국경 관문에서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
- 판매자가 상품과 관련된 리스크를 부담하는 Incoterms에 따른 물품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

### 04. 무역 및 관세

- 관세 당국은 90일 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기업을 검토하여 집행 조치를 취한다.
- 외국산 원산지 정보가 사전 인쇄된 포장물을 수입 허용되는 경우의 안내
- UKVFTA에 따른 EORI 번호 등록



## 법인소득세



### 지침 문서

#### 회사 정책에 따른 고정 출장 수당

공문에 따르면 기업이 재무 규정 또는 기업 내부 규정에 따라 출장 파견된 주재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세 ("CIT") 계산 시 공제 비용으로 인정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5월 20일 제17322/CTHN-TTHT호 OL)*

#### 장기계약에 대한 현금지원

회사가 장기 계약에 대한 현금 지원을 받았는데 해당 지원이 수리, 보증, 광고 또는 프로모션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회사는 CIT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CIT 과세소득은 1회 기준으로 확정되고 여러 분기에 배분되지 않으며, CIT계산을 위한 소득은 회사가 해당 지원을 받는 시점에 결정된다.

*(세무총국의 2021년 4월 1일 제933/TCT-DNL호 OL)*

판매 및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종속생산시설이 법인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소득

기업은 종속지점의 세금 인센티브 관련된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에서 발생한 매출, 비용 및 과세소득을 별도로 확정신고해야 한다.

법인세 인센티브를 받는 과세소득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소득은 매출의 비율 또는 총 수익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 활동의 공제 가능한 비용 또는 과세연도의 공제 가능한 비용의 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1년 6월 25일 제10779/CTBDU-TTHT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 부가가치세



### 지침 문서

**판매 및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중속생산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

1. 본사에서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계산서 및 문서 사용에 관하여 기업은 비즈니스 및 회계 방식을 기반으로 계산서 사용의 두 가지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 부가가치세("VAT") 영수증의 사용;
- 내부배송 오더에 첨부된 내부배송표 및 출고표를 사용함

2. VAT 신고 : 별도의 회계기록이 없는 생산시설은 본사에서 VAT 신고를 하고 현지 세무당국에 아래와 같이 해당울로 납부한다.

- VAT 세율 10%이 적용되는 상품에 대한 2%; 또는,
- VAT 세율 5%이 적용되는 상품에 대한 1%.

납세자가 본사에서 세금의무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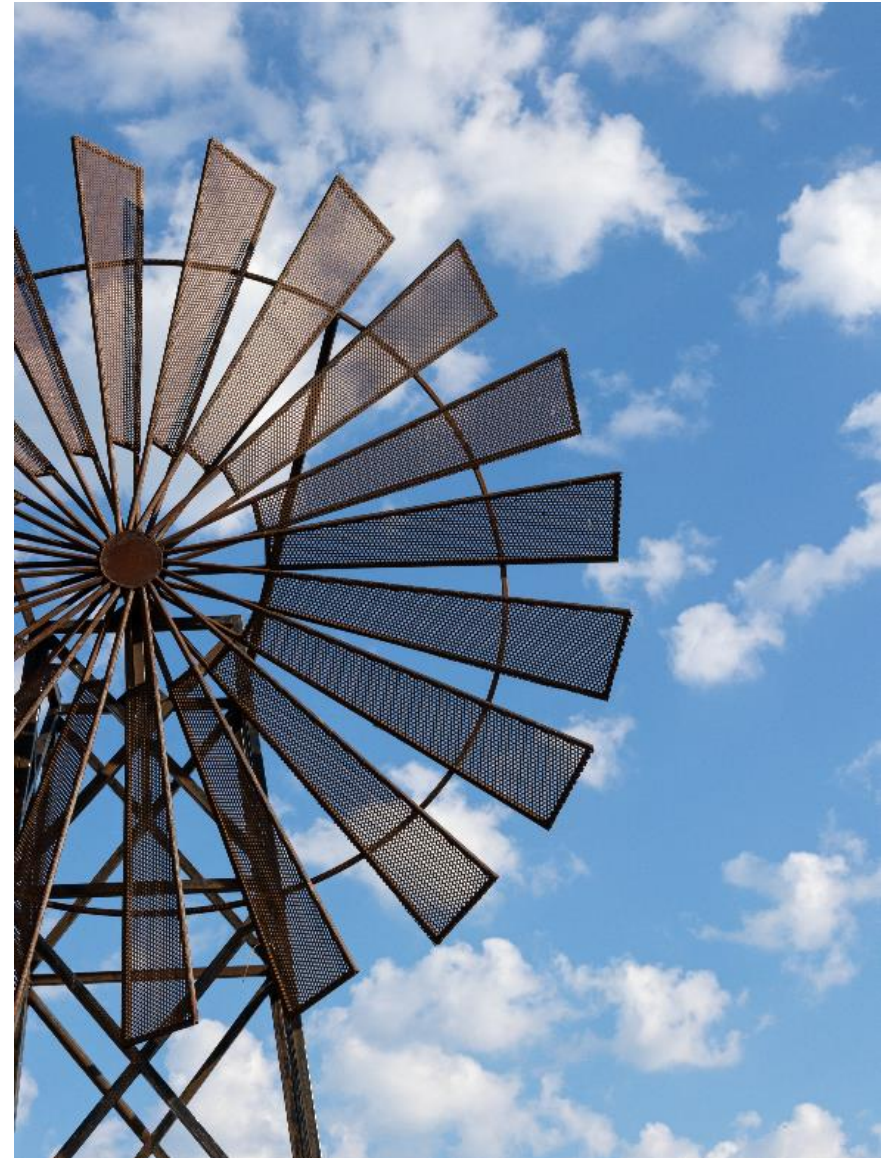
*(Binh Duong 세무국의 2021년 6월 25일 제10779/CTBDU-TTHT호 OL)*

**본사와 같은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신고**

본사와 같은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투자 프로젝트의 VAT 는 프로젝트 소재지 세무 당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 단계이며 운영되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이나 납세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본사는 규정에 따라 매입 VAT를 신고하고 공제할 책임이 있다. 신규 프로젝트가 설립되고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본사는 투자 프로젝트의 매입 VAT를 종합하여 신설법인에 전달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1년 7월 6일 제11220/CTBDU-TTHT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 외국인계약자세



### 지침 문서

#### 국경 관문소에서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 국경 관문소에서 배송된 제품 및 설치 서비스 (외국 계약자와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분리하는 계약)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계약자의 과세 소득은 외국인 계약자세 ("FCWT")가 부과되며 구체적으로 :

- 기계 및 장비 가치의 경우: CIT 1% 적용 및 수입단계에서 납부된 VAT의무
- 설치 서비스 가치의 경우 : CIT 2% 및 VAT 5%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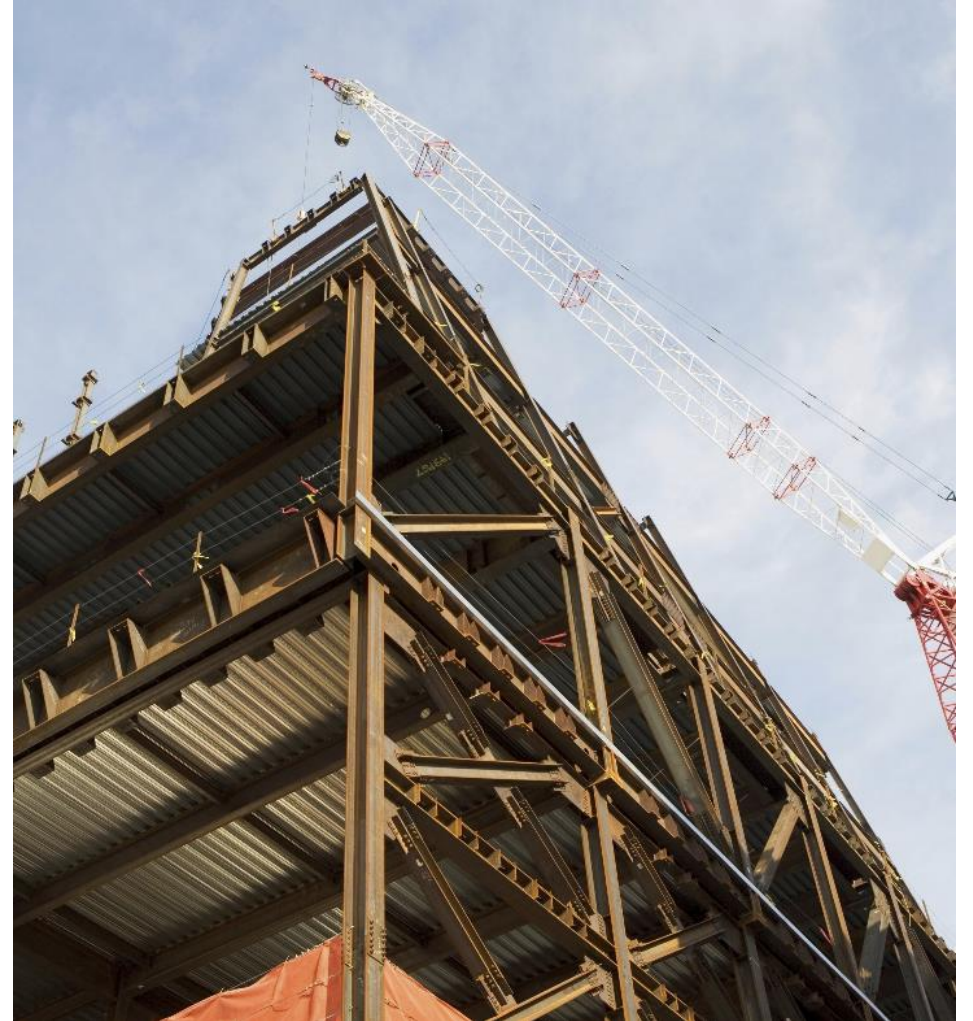
하지만 구매자가 해외 국경 관문소에서 베트남으로 제품을 운송 및 수령과 관련된 모든 책임, 비용 및 리스크(보증 조건은 판매자의 책임과 의무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 계약자의 소득은 베트남 FCWT이 부과되지 않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5월 11일 제15175/CTHN-TTHT호 OL)*

#### 판매자가 상품과 관련된 리스크를 부담하는 국제규칙 (Incoterms)에 따른 물품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

외국인 계약자가 Incoterms 납품 조건에 따라 물품을 제공하는데 판매자가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물품과 관련된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 외국인계약자세가 부과된다.

*(Dong Nai 세무국의 2021년 6월 10일 제5615/CTDON-TTHT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 무역 및 관세



### 지침 문서

**관세 당국은 90일 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을 검토하여 집행 조치를 취한다.**

관세총국은 지역 세관당국에게 최대 90일까지 세금 미납액이 있는 모든 기업들을 검토하여 세금 연체이자를 징수하도록 조치한다.

따라서 “통관 절차 중단”의 조치에 대해 세관당국은 최소 5일 전에 기업에 통보를 보내고 해당 정보를 세관 웹사이트에 공식적으로 게시한다.

세금 미납에 대한 집행 결정은 기업이 세금 미납액을 다 납부하거나 점차로 납부/연장 승인 받거나 납부 면제를 받는 날로부터 종료된다. 세관 당국은 기업에 세금 미납액 통보서(30일 이상 지연된 경우)를 보내고 세관 웹사이트에 세금 미납액의 목록을 게시하여 기업이 조회, 신고 및 납부를 자동적 수행하게 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06월 14일 제2893/TCHQ-TXNK호 OL)

**외국산 원산지 정보가 인쇄된 포장물 수입이 허용된 경우**

관세총국은 인쇄된 외국산 포장물의 수입금지가 기업의 생산 활동에 직접적 사용되지 않고 무역 및 소비 목적으로 수입함에만 적용되는 경우를 언급했다.

세관 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쇄된 외국산 포장물의 수입을 허용한다:

- 외국산 정보가 인쇄된 포장물(병, 항아리, 튜브 등)은 분리, 포장 후 수출 또는 국내 소비를 위해 원산지가 수입된 포장물에 표시된 원산지와 일치하는 완제품 및 반제품과 같이 수입된다;
- 외국 원산지 및 상표가 인쇄된 포장물은 이전에 수입된 손상된 포장물을 대체하기 위해 수입된다. 단, 교체할 포장물은 손상된 포장물과 동일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6월 21일 제3108/TCHQ-GSQL호 OL, 2021년 3월 2일 제974/TCHQ-GSQL호 OL에 대한 지침)

**UKVFTA에 따른 EORI 번호 등록**

영국 수출자는 이전 REX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신 새로운 EORI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6월 28일 제1249/GSQL-GQ4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Kim Min Je**  
KSG Manager  
+84 90 218 5562  
mkim21@deloitte.com



**Park Eun Sil**  
Tax Manager  
+84 90 220 4587  
eunsipark@deloitte.com

### Hanoi Office

15<sup>th</sup>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 Ho Chi Minh City Office

18<sup>th</sup>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VIETNAM**

Making an impact since 1991

#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